

【 6 】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8. 2. 4.

제출자 : 양주군수

□ 개정이유

-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신설 사용하고 이에따른 수수료를 부과.
-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수수료(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사양을 신설함(안 제7조)

나. 쓰레기 봉투판매가격 인상 내용을 개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에 의 한 처리비용 수수료를 신설함(안 제9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폐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중 “쓰레기봉투의 제작등”을 “쓰레기봉투및 음식물쓰레기전용
수거용기제작등”으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 규정한 음식물쓰레기전용
수거용기의 제작사양은 별표4-2와 같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제9조 제목중“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하고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중 “제3호의”를 “제3호와 제4호의”로 하고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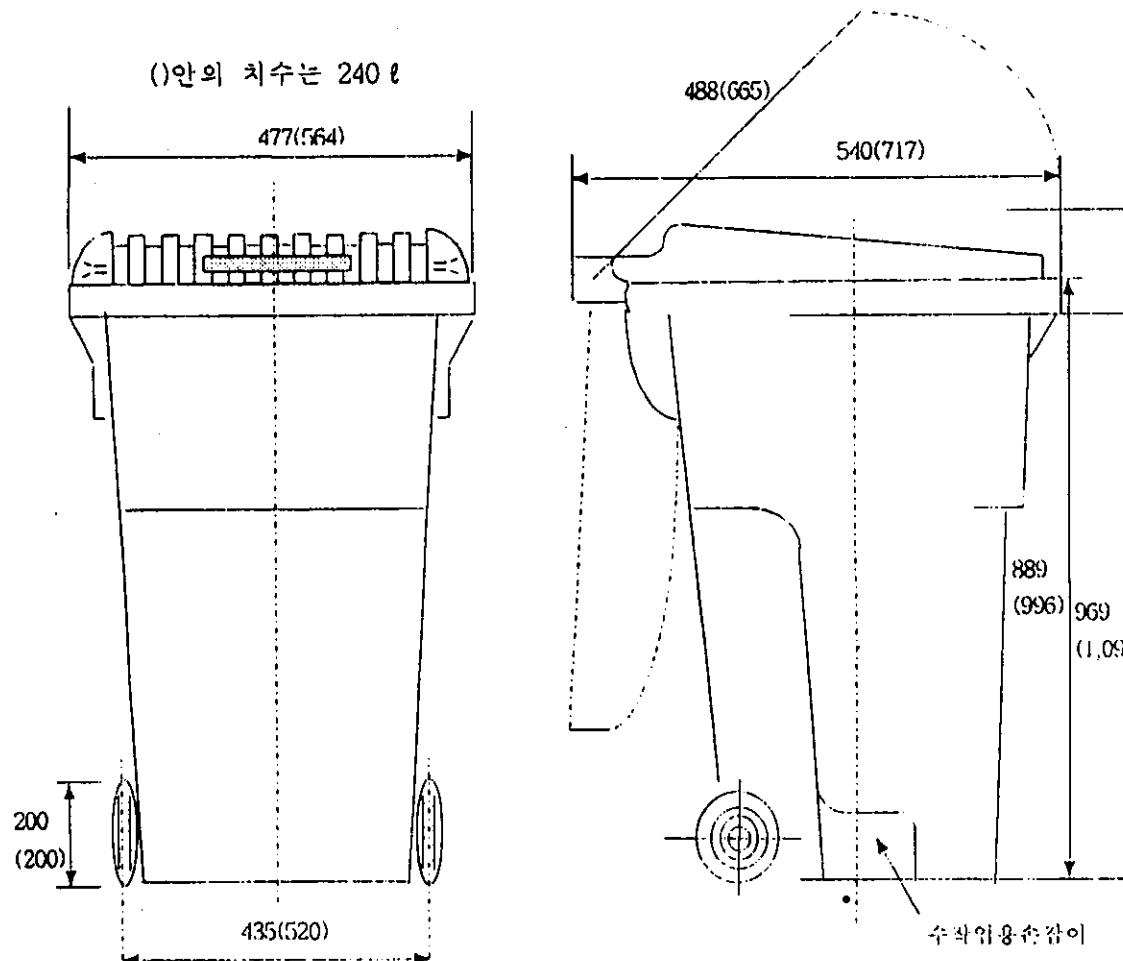
4. 음식물쓰레기의 수수료는 전용봉투의 경우 일반용봉투가격을 기준
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는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을 산정한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4-2)

음식물쓰레기전용 수거용기 사양 (제7조관련)



[] 사 양

구분	120ℓ	240ℓ
1)재질	HDPE (고밀도 폴리에 스틸렌)	HDPE (고밀도 폴리에 스틸렌)
2)무게	11kg	14.8kg
3)용량	50kg	100kg

(별표 6)

쓰레기봉투 용량별 판매가격(제9조 제2항 관련)

구 분	봉투용량(l)	봉투규격(가로×세로,cm)	판 매 가 격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5	26 × 46.5	80원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10	33 × 56.5	160원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20	42 × 69.5	310원
일반용	50	56 × 91.5	750원
일반용	75	65 × 103.5	1,250원
일반용	100	71 × 113.5	1,450원

○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이익은 9%를 적용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처리비용 수수료(제9조 제1항 관련)

구 분	용기용량(l)	용기규격cm (가로×세로×높이)	수 수 료	비 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120	47.7×54×89.9	2,000	수수료는 스티커 판매비용임.
	240	56.4×71.7×99.6	4,000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동)①~⑤(생략) <u>(신 설)</u>	제7조(쓰레기봉투및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제작동)①~⑤(현행과 같음) <u>⑥양주군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 규정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제작사양은 별표4-2와 같거나 유사하여야 한다.</u>
제9조(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생략) 1~3(생략) 4(<u>신 설</u>)	제9조(폐기물 ----- -----)①(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u>4. 음식물쓰레기의 수수료는 전용봉투의 경우 일반용봉투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는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을 산정한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한다.</u> ②----- <u>제3호와 제4호의 -----</u>
②제1항 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6과 같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설)	<p style="text-align: center;">(별표4-2)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시양 (제7조원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1)안의 차수는 240ℓ</p> </div> <div style="width: 45%;"> <p>418(065) 540(717)</p> <p style="text-align: center;">수거용품준비</p> </div> </div>	<p>□ 시 양</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120ℓ</th> <th>240ℓ</th> </tr> <tr> <th>HDP(E) (고밀도 폴리에 스틸렌)</th> <th>HDP(E) (고밀도 폴리에 스틸렌)</th> </tr> </thead> <tbody> <tr> <td>1)재질</td> <td>11kg</td> <td>14.8kg</td> </tr> <tr> <td>2)무게</td> <td>50kg</td> <td>100kg</td> </tr> <tr> <td>3)용량</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120ℓ	240ℓ	HDP(E) (고밀도 폴리에 스틸렌)	HDP(E) (고밀도 폴리에 스틸렌)	1)재질	11kg	14.8kg	2)무게	50kg	100kg	3)용량		
구분	120ℓ	240ℓ														
	HDP(E) (고밀도 폴리에 스틸렌)	HDP(E) (고밀도 폴리에 스틸렌)														
1)재질	11kg	14.8kg														
2)무게	50kg	100kg														
3)용량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6)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별표6) 쓰레기봉투 용량별 판매가격				
구분	봉투용 량(ℓ)	봉투규격 (가로×세로cm)	판매가격	구분	봉투용 량(ℓ)		
일반용 음식물쓰 레기전용	5	26 × 46.5	70원	일반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5	-----	80원
일반용 음식물쓰 레기전용	10	33 × 56.5	140원	일반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10	-----	160원
일반용 음식물쓰 레기전용	20	42 × 69.5	270원	일반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20	-----	310원
공공용 일반용	50	56 × 91.5	650원	공공용 일반용	50	-----	750원
일반용	75	65 × 103.5	1,160원	일반용	75	-----	1,250원
공공용 일반용	100	71 × 113.5	1,340원	공공용 일반용	100	-----	1,450원

○ 쓰레기 규격 봉투 판매소 이익은 9%를 적용

○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이익은 9%를 적용

(신설)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처리비용 수수료

구분	용기용 량(ℓ)	용기규격	수수료	비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120	47.7×54×89.9	2,000	수수료는 스티커 판매비용 임
	240	56.4×71.7×99.6	4,000	

第39編 環 境 第3章 廢棄物管理 廢棄物管理法

의 溶出 등을 分析함에 있어서 그 分析의 정확과 統一을 기하기 위하여 廢棄物公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2章 廢棄物의 排出 및 처리

第12條 (廢棄物의 처리기준등) 누구든지 廢棄物을 收集·運搬·보관·처리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5·8·4)

第13條 (生活廢棄物의 처리등)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에서 排出되는 生活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이 지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 <改正 95·8·4>

②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廢棄物處理業者”라 한다)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8·4>

③市長·郡守·區廳長은 生活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5·8·4>

④環境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정하고자 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廢棄物排出量에 따라 手數料를 차등 徵收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新設 95·8·4>

第14條 削除 <95·8·4>

第15條 (生活廢棄物排出者의 處理協助등) ①生活廢棄物이 排出되는 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이하 “生活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관할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生活環境保全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廢棄物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減量하여 排出하여야 한다. <改正 95·8·4>

②生活廢棄物排出者는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生活廢棄物을 종류·性狀別로 分離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改正 95·8·4>

第16條 (生活廢棄物保管施設등의 設置) ①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生活廢棄物排出者로 하여금 總理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한 生活廢棄物保管施設 또는 容器를 設置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8·4>

심의의결서

□ 97. 12. 24 군청상황실에서 개최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안건 : 쓰레기종량제봉투 인상(안) 승인건
- 신청금액

(단위:원)

구분	봉투용량(l)	봉투규격 (가로×세로,cm)	현행	인상후	비율(%)
일반용 음식물	5	26×31	70	80	14
일반용 음식물	10	33×40	140	160	14
일반용 음식물	20	41×49	270	310	15
일반용	50	56×67	650	750	15
일반용	75	64×77	1,160	1,250	8
일반용	100	71×85	1,340	1,450	8

○ 심의의결내용

구분	봉투용량(l)	금액	비고
일반용 음식물	5	80	
일반용 음식물	10	160	
일반용 음식물	20	310	
일반용	50	750	
일반용	75	1,250	
일반용	100	1,450	

양주군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1994. 12. 29]
[조례 제1518호]

개정 1995. 4.13 조례 제1532호

개정 1996. 7. 8 조례 제1576호

개정 1997. 7. 7 조례 제1631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 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 장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 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조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을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폐기물중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이 조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 4 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둑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한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

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등을 정할 수 있다.

제 5 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 6 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꽃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짙은 청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 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3과 같다.

제 7 조(쓰레기 봉투의 제작등) ① 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양주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양주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 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6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4와 같다.

제 8 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 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

제9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년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주군의 타 조례에 의하여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

제1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 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면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제1호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주군의 타 조례에 의하여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 판매소에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제14조(권한위임)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사무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지도와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2.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와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3. 기타 시책 추진의 상황에 따라 새롭게 도출되는 사항등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4.12.29 조례 제15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봉투판매를 위한 조치) 군수는 일반용봉투의 판매를 위하여 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표지판의 부착과 봉투판매소에 대한 봉투공급은 1994년 12월 25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 내지 제20조

는 삭제한다.

부 칙 (1995. 4.13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7. 8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7. 7 조례 제1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면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품 목	규 격	수 수 료 (원)
냉 장 고	500ℓ 이상	8,000
	300ℓ 이상	6,000
	300ℓ 미만	4,000
텔 레 비 견	42인치 이상	5,000
	12인치 이상	3,000
세 탁 기	모 든 규 격	4,000
에 어 콘	264m'형 이상	8,000
	66m'형 이상	5,000
	66m'형 미만	3,000
가 스 오 븐 렌 지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2,000
탈 수 기	모 든 규 격	2,000
공 기 청 정 기	높이 1m 이상	2,000
장 농	120cm장 1쪽	15,000
	90cm장 1쪽	10,000
소 과	대형 6인용	8,000
	대형 4인용	5,000
책 상	양수 : 대형	5,000
	편수 : 소형	4,000
식 탁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피 아 노	어 프 라 이 트	10,000
	그 랜 드	15,000

※ 상기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 유사한 수수료를 적용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 이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컵, 백 -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캔, 알루미늄(음식용유) - 기타캔(부탄가스, 살풍제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절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3. 병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료수병, 기타병 - 농약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것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 물로 헹군후 음료수병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제9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4. 고 철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미늄 샷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5. 플라스틱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T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 품류 *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제9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

(별표 3)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제6조 관련)

구 분	봉투용량 (ℓ)	봉투규격 (가로×세로,cm)	호 칭 두 깨 (mm)	
			저 밀 도	고 밀 도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5	26×46.5	0.025	0.020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10	33×56.5	0.025	0.020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20	42×69.5	0.030	0.025
공공용 일반용	50	56×91.5	0.040	0.035
일반용	75	65×103.5	0.045	0.040
공공용 일반용	100	71×113.5	0.050	0.045

제9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별표 4)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7조 관련)

<p>18 cm³</p> <p>이 봉투를 뮤기 위한 부분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양주군 문장</p> <p style="text-align: center;">쓰 레 기 봉 투 (20ℓ) - 일 반 용 -</p> <p>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뮤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양 주 군 수</p> <p>연락처 : 양주군청 환경보호과 (전화 : 44-9900, 49-1335)</p> <p>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p> <p style="text-align: center;">..... 41cm³</p>	<p>이 봉투를 뮤기 위한 부분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양주군 문장</p> <p style="text-align: center;">쓰 레 기 봉 투 (50ℓ) - 공 공 용 -</p> <p>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이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양주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양 주 군 수</p> <p>연락처 : 양주군청 환경보호과 (전화 : 44-9900, 49-1335)</p> <p>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p>
---	--

(별표 4-1)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7조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양주군 문장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만 수거합니다.
-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읍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배출처	배 출 요 령
가 정	○ 음식물쓰레기를 선별하여 이를질 제거(병뚜껑, 비닐조각등)
	○ 개수대에서 1차 침출수 제거(2시간 이상)
	○ 건조용기에서 2차 침출수 제거(1일 이상)
	○ 소각 가능토록 건조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묶어 배출
음식업소	○ 음식물쓰레기를 선별하여 이를질 제거(병뚜껑, 비닐조각등)
	○ 건조용기에 담아 침출수 제거(1일 이상)
	○ 소각 가능토록 건조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묶어 배출

양 주 군 수

연락처 : 양주군청 환경보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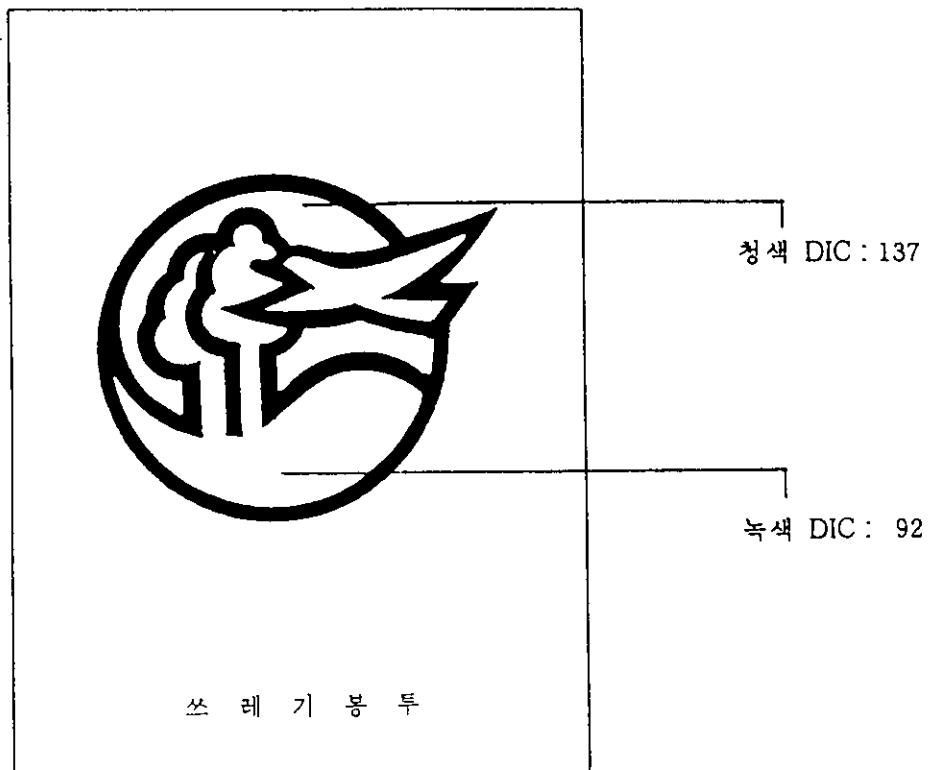
(전화 : 44-9900, 49-1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 인증표시

제9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별표 5)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제8조 관련)



- 주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제9편 환경보호 양주군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별표 6)

쓰레기봉투 용량별 판매가격

구 분	봉투용량(ℓ)	봉투규격(가로×세로,cm)	판매가격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5	26×46.5	70원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10	33×56.5	140원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20	42×69.5	270원
공공용 일반용	50	56×91.5	650원
일반용	75	65×103.5	1,160원
공공용 일반용	100	71×113.5	1,340원

-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이익은 9%를 적용